

 국토교통부	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1>		
		배포일시	2020. 9. 18.(금) 총 6매(본문5, 참고1)	
담당 부서	항공안전 정책과	담 당	• 과장 김상수, 사무관 박주환, 주무관 손경화 • ☎ (044) 201-4244, 4246, 4249	
	항공운항과	담 당	• 과장 오성운, 사무관 정상모, 주무관 장여진 • ☎ (044) 201-4260, 4293	
	항공기술과	담 당	• 과장 민풍식, 사무관 원정운 • ☎ (044) 201-4284, 4285	
	항공교통과	담 당	• 과장 유경수, 사무관 고상룡 • ☎ (044) 201-4294, 4295	
	국제민간항공 기구전략기획팀	담 당	• 팀장 이호진, 사무관 김수정 • ☎ (044) 201-4370, 4371	
	공항안전 환경과	담 당	• 과장 조현준, 사무관 이호락 • ☎ (044) 201-4347, 4344	
보 도 일 시		2020년 9월 21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20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토부-항공업계 맞손, 항공산업 안전역량 높인다

- 코로나-19 대응, 안전한 항공여행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방안 시행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코로나-19 환경에서도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항공여행을 할 수 있도록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9월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방안은 코로나-19 영향에 따른 항공현장의 운영여건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항공사·공항·관제시설 등에서 조치하여야 하는 각종 안전수칙과 향후 수요회복에 대비한 우리 항공산업의 안전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.

- 특히, 국제민간항공기구*(ICAO) 이사회(우리나라 등 36개 국가 활동)가 발간한 「코로나-19 항공수요회복 대응지침」도 참조하여 안전강화 방안에 반영하였다.(☞ 참고)

*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,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): '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을 근거로 '47년에 설립된 UN산하 항공전문기구(193개 회원국, 우리나라 '52년 가입)

□ 「코로나-19 대응 항공안전강화 방안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기내 방역 및 위생관리에 관한 안전수칙 시행

- 국토교통부는 승무원을 포함한 모든 항공기 탑승자를 대상으로 방역마스크, 손소독제 등 방역·위생 용품에 대한 기내 안전수칙을 항공사에 지침으로 제공하고 시행토록 한다.
- (산소마스크 착용절차 보완) 비행 중 기내 압력의 비정상 또는 화재 등 상황에서는 반드시 방역마스크를 벗고 산소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승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승객에게 안내토록 한다.
- (손 소독제 관리지침)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손 소독제*는 인화점이 상온에 가깝고 가연성도 높아, 화기·전기제품과는 이격시켜 보관하되 고온상태**에서 사용·보관하지 않도록 항공사 등에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.

* 시중에 판매되는 손소독제는 ‘이소프로필알코올’, ‘에탄올’ 등 다양한 종류의 알코올 성분으로 제조되고 있어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음

** Boeing사가 포함된 국제항공제작협회는 소독제(이소프로필알코올 70% 함량 기준)를 화기·전기로부터 최소 15cm 떨어진 상태에서 사용·보관할 것을 권고 (예: 객실에서는 전기콘센트, LCD 모니터 등 전기설비 주의 필요)

② 감염병 확산 방지를 통한 항공기 운항안전 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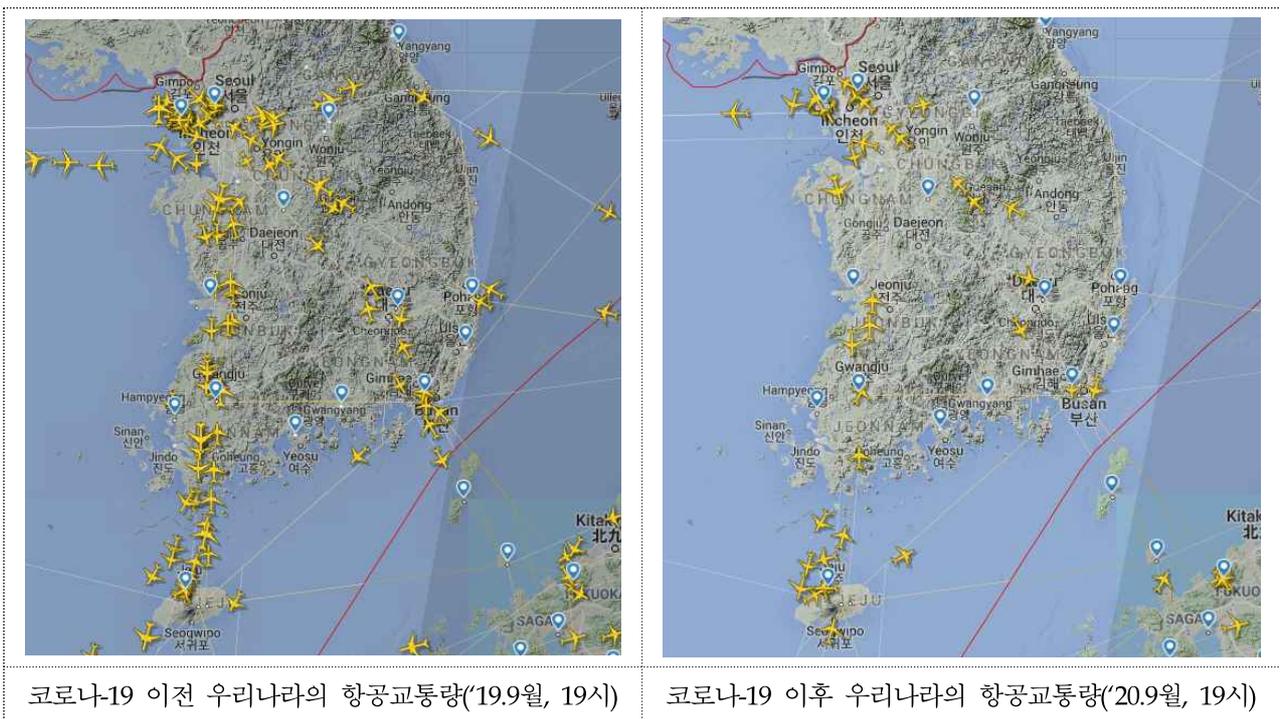
- (항공기 안전운항 지침) 국토교통부는 코로나-19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지침과 연계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초점을 맞춘 대응지침을 9월말 항공사에 배포할 계획이다.
- 이 지침에는 기내 공기정화·방역, 조종실·객실 운영 등과 함께 객실구역 간 이동제한, 화장실 사용대기 중 거리두기, 감염의심자 격리 등 승객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.

- (관제시설 방역 강화) 항공교통관제시설도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시설 운영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, 관제사 개인별 방역·위생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을 시행하여 항공기 안전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.

③ 운항 형태·규모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안전관리

- (여객기를 활용한 화물운송) 국토교통부는 전년 동기 40% 수준으로 운송량이 감소한 항공사의 영업손실 만회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기 좌석에 화물탑재, 객실좌석 제거 및 기내 화물탑재 등을 위한 다양한 안전절차를 항공기 제작사 지침을 근거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.
- (운항회복 점검) 운항규모가 전년 동기 60%까지 회복한 항공사를 대상으로 조종사·정비사 등 종사자 교육훈련 및 항공기 정비상태 등에 대한 운항준비 실태를 점검*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한다.

* 현재까지 티웨이항공('20.6.26~6.30), 진에어('20.7.22~7.28) 등 점검



(출처. flightradar24)

④ 조종사·관제사 등 종사자 숙련도 유지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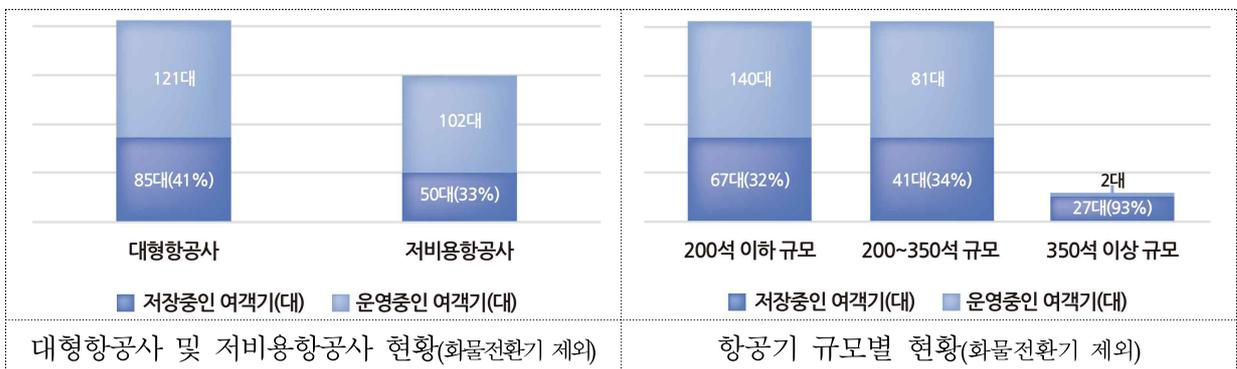
- (조종사 비행기량 관리) 조종사에 대한 비행기량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근 비행경험을 고려한 기장-부기장 조 편성, 조종사 개인별 비행스케줄 조정 등 항공사의 조종사 기량관리 실태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.
- (관제사 업무숙련도 훈련) 또한, 관제사의 업무숙련도 유지를 위해 항공교통량이 많았던 상황을 모의관제장치로 재현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등 관제사 기량유지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.

항공기·공항시설 등 관리상태 진단

- 코로나-19 영향에 따른 항공기 운항편 감소로 현재 인천·김포·김해 등 공항에 약 130대의 여객기가 운항계획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주기(공항 주기장에 장기간 세워져 있는 상태)되어 있다.
- (비운항 항공기 특별관리)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장기간 주기상태로 있어야 하는 항공기의 부식·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가 실시하는 저장정비*의 적절성 등을 관리 감독하고,

* 장기간 운용하지 않는 경우, 기체부식·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(엔진 오일을 저장용 용액으로 교체, 엔진 보호커버 장착 등) 및 주기적 시운전 등

【국제항공운송사업자 여객기 저장 현황(8월말 기준, 이스타항공 포함)】



* 그래프 상의 항공기 “좌석규모” 구분은 유사한 규모의 항공기 기종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사별 좌석 운영방식에 따라 동일 기종의 실제 좌석수가 일부 상이 할 수 있음.

- (공항노면 손상 예방) 공항에서는 장기주기 항공기의 하중 등에 따른 주기장 노면침하 예방, 장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일부 탑승교 등 유휴시설에 대한 고장·결함진단 및 정비 등이 주기적으로 실시되도록 지도·감독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“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운항하는 항공에 있어 안전은 필수요건이자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코로나-19 시대에서도 이는 예외가 될 수 없다”면서,

- “이번의 선제적 안전조치가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, 국제적으로는 향후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-19 대응 관련 국제기준의 우수 기초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도 적극 홍보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- 아울러, “항공산업의 성공적인 코로나-19 극복을 위해 항공업계 및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”고 덧붙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 안전정책과 박주환 사무관(☎ 044-201-424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(개요)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항공산업의 안전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회복을 위해 ICAO이사회(CART*)가 마련한 보고서 및 관련 지침
 - * CART(Civil Aviation Recovery TF) : ICAO이사회에서 국제항공운송협회, 국제항공제작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-19 대응반
- (보고서 지위) ICAO 이사회가 긴급하게 마련하여 각 회원국 등에 이행을 권고하는 사항으로 국제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,
 -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는 각종 고위급 회의, 총회('22년 예정), 이사회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제기준·지침으로 제정될 전망
- (주요내용) 항공운송산업의 안전·보건·보안·지속성장 등을 위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권고사항(11개) 및 관련 이행지침
 - 권고사항 : 규제 한시완화(차이점 통보 포함), 환경변화에 따른 안전·보안 지침 마련, 탑승자 추적정보 수집, 산업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등
 - 이행지침 : 거리두기, 방역용품 착용, 체온측정, 탑승자정보 수집 등 관련 지침을 공항·항공기·승무원·화물 등으로 구분
 - ☞ 금번 안전강화 방안은 이중 “항공기”·“승무원” 부문을 중심으로 수립
 - 항공기 : 탑승절차, 좌석배정, 기내 행동수칙, 공기정화, 승무원 보호, 감염의심 승객·승무원 관련 조치, 조종실 관리 등
 - 승무원 : 승무원의 출근 → 검역·출입국 수속 → 운항 → lay-over 등 관련 감염예방을 위한 지침
 - 공항 : 터미널*, 이동지역 등 관련 청소, 방역, 위생 등 가이드
 - * 체크인카운터, 보안검색, 에어사이드 지역, 환승, 수하물·위탁수화물 처리 등
 - 화물 : 공항에서 화물을 운반·관리하고 이를 항공기에 탑재하는 취급업 종사자에 대한 방역지침